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라 고시상의 용어 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 명확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제도 미비점 보완

(제2조제1항제9호,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제11조제3항, 제23조제4항제4호, 별표 5 제1호)

- 식별부호 신청 근거 마련, 적합인증(등록)기자재와 조합된 복합기자재 신청 절차 명문화, 표시 기준 및 문구 오류 등 개선·보완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현행화

(제8조제4항, 17조제3항제2호, 제21조제4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7호·제8호·제10호·제11호)

-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 정의내용 등 보완, 일부기자재재분류,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기자재 제외 대상 명확화 등
-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현행화, 구내통신설비류 대상기자재재분류 등

다. 적합성평가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7항, 제9조, 제16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제2호·제3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2조제3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 별표 1제1호·제3호·제4호·제7호·제11호,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서식)

- 적합성평가 고시상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 등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xx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xx월 xx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함체**”를 “**함체(函體)**”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자기 적합확인시 자기적합확인을 한**”을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를 “**영 제7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를 “**무선분야**”로,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선분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방송법」 제79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의2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 제68조 · 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제5조제4항 중 “**신청자**”를 “**신청자, 최초의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2호·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을 “(적합등록증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중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을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으로, “한함)”을 “한함.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다목 2), 라목, 사목 1) ③, 아목 3)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캐패시터”를 “커패시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각각 “적합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적합등록필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으로, “적합등록필증의”를 “적합등록증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을 “자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에서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를 “가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각각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자재의 고유번호

제27조제1항제2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인증서의 재발급)”을 “(인증서 등의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장은”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로,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 및 잠정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인증서(등록증)”로,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장은 인증서(등록증)”로 한다.

별표 1 제1호 하목 1) 가)부터 다)까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제3호 타목 3) 중 “핸드오프”를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로 하며,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4) 중 “핸드오프”를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로 하고, 제7호 다목 5)와 9) 중 “팩시밀리”를 “팩스”으로 하며, 19) 중 “라우터”를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로 하고, 24) 중 “팩시밀리”를 “팩스”로, “라우터”를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로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목 27)을 라목 1)로 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다. 단말기기류	27) (삭 제)										
라. 구내통신 설비류	1) 가입자보호기(전화용)			○				○	LOW20		

별표 1 제8호 가목 2)를 삭제하고, 3) 중 “QPSK”를 “QPSK, 8-VSB”로 하며, 4) 중 “아날로그방식, 디지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하고, 제10호 자목 중 “보호기”를 “보호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용)”로 하며, 차목 중 “CAT V”를 “CATV용”으로 하고, 제11호 나목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강도			
나. 생활가전기류	8) 전열기구류 ※ 난방가전	○ (정의) - (현행과 같음) - 전기를 사용한 내부 발열체를 이용하여 특정 공간이나 <u>신체온도를</u> 유지하기 위해 열을 공급하는 기기 ○ (현행과 같음)	○		○		STV11
		<u>○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u> <u>-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며 회로 없이 단순 열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전기가열기기</u>					

별표 1 제11호 나목 17) 중 “UV손톱경화기”를 “UV손톱경화기, 화장품어플리케이터”로 하고, 19) 중 “초음파를”을 “초음파, 전동모터를”로 하며, 33)에 다음과 같이 참고사항을 신설하고, 34)의 전자파적합성란을 “○”로 하며, 35) 중 “○ 경공업, 농업, 산업 환경(차목.1) 제외)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삭제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강도			
나. 생활가전기기류	33) 동식물용 전기기기류	o (현행과 같음) ※ 동식물 전용으로 사용 하는 기기에 한하며, 다른 규정에 명확히 분류되어 있는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			○	POL11
		o (현행과 같음)					
		o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11호 다목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3) 중 “아크용접기”를 “아크용접기
(전기 불꽃 용접기)”로 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강도			
다. 전가전동 공구류	1) 전동공구류	o (현행과 같음)	○		○		ETL11
		o (현행과 같음)	○			○	ETL12
		o (현행과 같음)	○			○	ETL13
		o 산업현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관굽힘기, 철근결속기, 볼트압축기, 콘크리트바이브레이터 등 건설장비류 - 전동경작기, 가축사료과쇄기					

별표 1 제11호 바목 1) ① 중 “함체”를 “함체(函體)”로 하고, 바목 1) ② 중
“헤드셋”을 “헤드셋, 웹카메라”로 하며, 바목 4) 중 “디지털카메라(캠코더 포함),
웹카메라(액션캠 포함)”을 “디지털카메라(캠코더, 액션캠 포함)”로 하고, 사목

1) ① 중 “지폐계수기”를 “지폐계수기(지폐 세는 기계)”로 하며, 차목 3) 중 “나목, 다목, 라목”을 “다목, 라목, 마목”으로,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로 하고, 1)과 2)의 참고사항과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비고란 제2호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전자파 강도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차. 기타 특수조 건의 기자재	1) (현행과 같음) ※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에 따라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적용		○		○	○	REC1
	2) (현행과 같음) ※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에 따라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적용		○		○	○	REC2
	5)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일반표준(KS C 9610-6-2, KS C 9610-6-4)만을 적용 하는 기자재 (다만, 산업 환경에서의 전자파 일반표준만을 적용하더라도 차목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임)						

별표 5 제1호 나목 3) 중 “신청자”를 “공개자”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다목 2) 중 “신청”을 “신청(공개)”로 한다.

A	B	C	D	-	X	X	~	X	X
①					②				
공 개 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5-xx호, 2025. xx. xx.>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u>함체</u>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5. ----- ----- <u>함체(函體)</u> ----- ----- ----- ----- ----- ----- ----- ---.
6.·7. 삭제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기자재의 고유번호”라 함은 적합인증(등록) 신청시 부여되는 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와 <u>자기적합확인시 자기적합확인을 한</u> 자가 부여하는 기자재의 관리번호 등 적합성평가 번호를 말한다.	9. ----- ----- ----- -- <u>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u> ----- ----- ----- -----.

② (생 략)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2. 3. (생 략)

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개별 적용기준

가.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
: 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나. 유선분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의2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다. (생 략)

3.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

-----.

1. 영 제77조의2제1항-----

2. 3. (현행과 같음)

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무선분야 -----
----- 제45조-----

나. 유선분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방송법」 제79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의2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
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
2호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
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 또는 별표 1
제11호 카목 1)과 2)에 해당하
는 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인 구성품은 지정시험기
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
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
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
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험으
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은 제외한다.

⑤ (생략)

제9조(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필증(전
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
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차목 -----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적합등록증 교부 등) -----

----- 적합등록증 -----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0조(적합등록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 마. (생략)

바.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 CB인증서(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가목 2) ①, 나목, 다목 1), 바목 [2)부터 6)까지], 사목 1) [①, ②, ④], 사목 5) 중 전기충전기, 아목 2)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후단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적합등록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

----- 한
합.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4. ~ 8.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①·② (생략)
<신설>

 제16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 6. (생략)
 ③ ~ ⑥ (생략)

별표 1의 제11호 다목 2), 라목, 사목 1) ③, 아목 3)에 해당하는기자재를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16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교수 -----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생략)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나. ~ 마. (생략)

바. 별표 1 제11호 카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거나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추가

3. (생략)

제18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 캐패시터 -----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 차목 -----

3. (현행과 같음)

제18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

적합등록증

1. · 2.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

적합등록증

3. -----

-- 적합등록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 적합

등록증의 -----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9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①
(생략)

② 원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
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
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
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
2 제1호 중에서 판매를 목적
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
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
2 제2호 중에서 국내에서 제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적합등록증 -----
-----.

제21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 자목에 해당하는 -----

2. -----
----- 가목에 해당하는 -----

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기자재

3. ~ 5. (생략)

⑤·⑥ (생략)

제22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
의 간소화 등) ① (생략)

② 영 제77조의4의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적
합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적합등록의 경우 : 적합등록
필증의 교부

③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
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2. (생략)

3.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
증 사본 1부

4. ~ 6. (생략)

④ (생략)

제23조(사후관리 등) ① ~ ③ (생

3. ~ 5.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
의 간소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적합등록
증-----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적합등록증

4.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사후관리 등) ① ~ ③ (현

략)

④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 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4.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번호

5. ~ 7. (생략)

⑤·⑥ (생략)

제27조(적합성평가의 해지)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 중단 등으로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②·③ (생략)

제28조(인증서의 재발급) 원장은 제7조 및 제9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 및 잠정인증서)를 교부받

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기자재의 고유번호

5. ~ 7.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적합성평가의 해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적합등록증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인증서 등의 재발급)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
--- 교부받은 인증서(등록증)-

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별지 제18호서식을 작
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전파 강도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라. 선박국을 레이다 기기	가) 30cm이하 선장 30cm이상	○	○				○		RAL
	나) 30cm이하의 유효 선장 25cm이상 32cm미만	○	○				○		RAM
	다) 30cm이하의 유효 선장 15cm이상 25cm미만	○	○				○		RAS

3. 간이무선국 · 우주국 ·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전파 강도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다. 동할공공망용 무선설비	3)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IPN4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전파 강도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가.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4)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MCA4
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4)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PCS4
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4)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IMT4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4)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LTE4
마. 협대역 차분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	4)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IOT4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 별지 제18호서식의 인
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장은 인증서(등
록증)-----.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전파 강도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라. 선박국을 레이다 기기	가) 30cm이하의 유효 선장 30cm이상	○	○				○		RAL
	나) 30cm이하의 유효 선장 25cm이상 32cm미만	○	○				○		RAM
	다) 30cm이하의 유효 선장 15cm이상 25cm미만	○	○				○		RAS

3.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전파 강도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다. 동할공공망용 무선설비	3)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IPN4

4.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전파 강도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가.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4)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MCA4
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4)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PCS4
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4)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IMT4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4)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LTE4
마. 협대역 차분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	4) 엘드오리(무선)용 채널변환 장치	○	○				○		IOT4

7.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제어 확인
					전자파 유수율	전자파 강도				
다. 단말기자재	5) <u>팩스밀리기</u> (전화기 부가 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	A15	
	9) <u>팩스밀리</u> 모뎀	○		○					A23	
	19)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하고 식별자발에 접속하는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5Gbps/10Gbps 단말장치 등)	○		○				○	A62	
	2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 단말기, G4 팩스밀리, ISDN 라우터 등)	○		○				○	A63	
	27) <u>가일크로보호기</u> (전화용)			□				□	LOW20	
<u><연.설></u>	<다목 27) 이상>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유수율	전자파 강도				
가. 종합유선 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1) 전파변조기	○		○				○	D11	
	2) 주파수변조기	○		○				○	D12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		○				○	D13	
	4)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 디지털 저장과 재전송용 변조기)	○		○				○	D14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	D66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공해수율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차. 보호기			○				○	LOW15	
차. 가일자보호기(CATV)			○				○	LOW16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가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다. 단말기제품	5) 팩스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	A15
	9) 팩스 모뎀	○		○			○	A23
	19)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하고 사설망에 접속하는 인터넷전화기,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 5Gbps/10Gbps 단말장치 등)	○		○			○	A62
	2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 단말기, G4 팩스 ISDN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 등)	○		○			○	A63
	27) (삭.제)							
라. 국내통신 장비류	1) 가일자보호기(전화용)		○				○	LOW20

8.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혼용성 전자파 강도	적합 인증	자기 적합 등록	
가. 종합유선 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1) 전복변조기	○		○			○	D11
	2) (삭.제)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BPSK)	○		○			○	D13
	4)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저장과 재전송용 변 조기)	○		○			○	D14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 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D66

10.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유수율	적합 인증 강도	적합 등록 회원	기기 부호		
차. 보호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용)				○				○	LOW15
차. 가십자보호기(CATV용)				○				○	LOW16

11.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자기 적합 확인	기기 부호
다. 전기·전동 공구류 : 전동드릴 또는 가열 기능을 이용하여 동작 하는 공구나 기기	1) 전동공구류	o (정의)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재료를 가공, 절단, 고정, 밀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센터, 전기 그라인더, 전기톱, 드릴 연마기, 트리밍기, 태이닝용, 직선/각도 전기대패, 절삭 및 연마 공구, 관통 앵글, 전동드릴(드라이버), 전동 임팩트 드릴, 전동 커터, 전동 밀착, 전동 앵글, 전기 장터잡기, 전기 가위, 전기테바, 줄리서, 전기테바, 전기전동기,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	○		ETL11
		o 정격입력이 1.5 kW를 초과하거나 USB 또는 전선지(충전지, 포팅)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ETL12
		o 배터리를 작동시키는 전동공구	○		○	ETL13
		o 산업현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 에서 제외한다. - 도관굴리기, 절근절구기, 볼트입속기, 콘크리트파쇄기, 전동절구기, 가속사프라이징기 등 건설장비류				
	3) 전기용접기류	o (정의) 전기 회로를 이용하여 물체를 접착 하거나 절단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이크로열전기, 용접이크로열기, 용접이크로열기, 플라즈마용접기	○		○	BMV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자기 적합 확인	기기 부호
바. 멀티미디어기기류 : 정보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방송수신 기기 및 멀티미디어기기 또는 이들이 조합된 기기	1) 정보기기류	①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				
		o (정의) 중앙처리장치를 가진 전자 컴퓨터로, 일반적으로 합체, 하드디스크, 랜선공급기, 주변 기기 및 내장구성품 등으로 구성되는 기기	○	○		IMC11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슈퍼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데스크탑, 노트북(랩톱), 태블릿, Box PC, Stick PC				
		② 컴퓨터 주변장치				
		o (정의)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로서, 주변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연결 되는 모든 장치, 유선(또는 케이블)으로 컴퓨터를 외부 장치에 연결하는 컴퓨터 내부의 모든 장치, 내부 또는 외부에 교체 할 수 있게 장착되는 모든 회로 기판이 해당하며,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내장구성품 등이 해당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저장장치 :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USB 메모리,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디스크장치, 네트워크부착장치(NAS)	○	○		IMC21
		- 입/출력장치 : 디스플레이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프린터(복합기 포함),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터치패드, 스타일, 도광 스테인, 웹캠, USB라이프캠, 이리온 - 헤드셋, 웹캠				
		- 컴퓨터 내장구성품 : 메인보드, 입/출력 카드, 랜선공급기, 컨트롤러장치, 비디오 카드, LAN 카드				
	4) 비디오기기류	o (정의) 비디오(영상) 신호의 발생, 입력, 저장, 재생, 감지, 송신, 수신, 출력, 처리, 스캐닝 (전송) 또는 제어(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	○	○		VD011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디지털비디오 레코더, CCTV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비디오 콘, 포노 프레임, 비디오 레코더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자기 적합 확인	기기 부호
사. 디지털기기류 : 8mm 이상의 타이핑 신호 또는 필름을 발사하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거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작업, 변환, 녹음, 재생, 복제, 저장, 감지 또는 전송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 하는 기기 또는 시스템 으로, 멀티미디어기기와 무선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	1) 일반 환경 사용 기기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o (정의) 디지털기기류의 정의에 해당하는 전자·전자기기로서, 일반 사무 및 업무 환경 에서 사용되는 기기	○	○		IMO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코딩기, 문서제단기, 원문기, 전동타자기, 계단기, 계산기, 번호표 발행기, 포폴카트 출력기, 금문출력기, 지폐출력기, 전자저울, 자율 편지서, 레이저마킹출력기, 레이저 자막기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핸드폰자동타자기, 전자계산기, MPPT태양광컨트롤러, 자동 테이프 디스 펜서, 전기소자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자기 적합 확인	기기 부호
다. 전기·전동 공구류 : 전동드릴 또는 가열 기능을 이용하여 동작 하는 공구나 기기	1) 전동공구류	o (정의)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재료를 가공, 절단, 고정, 밀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센터, 전기 그라인더, 전기톱, 드릴 연마기, 트리밍기, 태이닝용, 직선/각도 전기대패, 절삭 및 연마 공구, 관통 앵글, 전동드릴(드라이버), 전동 임팩트 드릴, 전동 커터, 전동 밀착, 전동 앵글, 전기 장터잡기, 전기 가위, 전기테바, 줄리서, 전기테바, 전기전동기,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	○		ETL11
		o 정격입력이 1.5 kW를 초과하거나 USB 또는 전선지(충전지, 포팅)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ETL12
		o 배터리를 작동시키는 전동공구	○		○	ETL13
		o 산업현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 에서 제외한다. - 도관굴리기, 절근절구기, 볼트입속기, 콘크리트파쇄기, 전동절구기, 가속사프라이징기 등 건설장비류				
	3) 전기용접기류	o (정의) 전기 회로를 이용하여 물체를 접착 하거나 절단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이크로열전기, 용접이크로열기, 용접이크로열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용접기	○		○	BMV11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자기 적합 확인	기기 부호
바. 멀티미디어기기류 : 정보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방송수신 기기 및 멀티미디어기기 또는 이들이 조합된 기기	1) 정보기기류	①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				
		o (정의) 중앙처리장치를 가진 전자 컴퓨터로, 일반적으로 합체(컴퓨터), 하드디스크, 랜선공급기, 주변기기 및 내장구성품 등으로 구성되는 기기	○	○		IMC11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슈퍼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데스크탑, 노트북(랩톱), 태블릿, Box PC, Stick PC				
		② 컴퓨터 주변장치				
		o (정의)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로서, 주변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연결 되는 모든 장치, 유선(또는 케이블)으로 컴퓨터를 외부 장치에 연결하는 컴퓨터 내부의 모든 장치, 내부 또는 외부에 교체 할 수 있게 장착되는 모든 회로 기판이 해당하며,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내장구성품 등이 해당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저장장치 :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USB 메모리,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디스크장치, 네트워크부착장치(NAS)	○	○		IMC21
		- 입/출력장치 : 디스플레이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프린터(복합기 포함),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터치패드, 스타일, 도광 스테인, 웹캠, USB라이프캠, 이리온 - 헤드셋, 웹캠				
		- 컴퓨터 내장구성품 : 메인보드, 입/출력 카드, 랜선공급기, 컨트롤러장치, 비디오 카드, LAN 카드				
	4) 비디오기기류	o (정의) 비디오(영상) 신호의 발생, 입력, 저장, 재생, 감지, 송신, 수신, 출력, 처리, 스캐닝 (전송) 또는 제어(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	○	○		VD011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디지털비디오 레코더, CCTV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비디오 콘, 포노 프레임, 비디오 레코더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전자제품 내에 적합 성도	자기 적합 확인	기기 부호
사. 디지털기기류 : 8mm 이상의 타이핑 신호 또는 필름을 발사하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거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작업, 변환, 녹음, 재생, 복제, 저장, 감지 또는 전송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 하는 기기 또는 시스템 으로, 멀티미디어기기와 무선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	1) 일반 환경 사용 기기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o (정의) 디지털기기류의 정의에 해당하는 전자·전자기기로서, 일반 사무 및 업무 환경 에서 사용되는 기기	○	○		IMO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코딩기, 문서제단기, 원문기, 전동타자기, 계단기, 계산기, 번호표 발행기, 포폴카트 출력기, 금문출력기, 지폐출력기(지폐 세 기), 전자저울, 자율 편지서, 레이저마 킹출력기, 레이저자막기				
		o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핸드폰자동타자기, 전자계산기, MPPT태양광컨트롤러, 자동 테이프 디스 펜서, 전기소자기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기자재의 관리번호

A	B	C	D	-	X	X	~	X	X
①					②				
신청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
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②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
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 언더바(_) 혼용 가능)’
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
가 정할 수 있음

4) · 5) (생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자재 또
는 포장에 일부만 표시하거
나 표시 전부를 생략하고 나
머지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을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1) (생략)

2)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
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
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통합인

-----.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A	B	C	D	-	X	X	~	X	X
①					②				
공개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공개자 식별
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②란은 공개자의 ‘기자재 식
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 언더바(_) 혼용 가능)’
로, 14자리 이내에서 공개자
가 정할 수 있음

4) · 5) (현행과 같음)

다. -----

--.

1) (현행과 같음)

2) ----- 신청(공개) ---

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해 또 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3) (생 략) 2. · 3. (생 략)	----- -----. 3)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	--

< 별지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xx.xx.>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	기 자 재 명 칭		제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제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 본 모 델 명			
	파 생 모 델 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무선 [] 유선 [] EMC [] SAR []전자파강도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시 험 성 적 서 정 보	시험기관명 :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 기술책임자 :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사용자설명서 1부. 3. 외관도 1부.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회로도 1부. 6.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시험성적서

-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2.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5. 회로도

- 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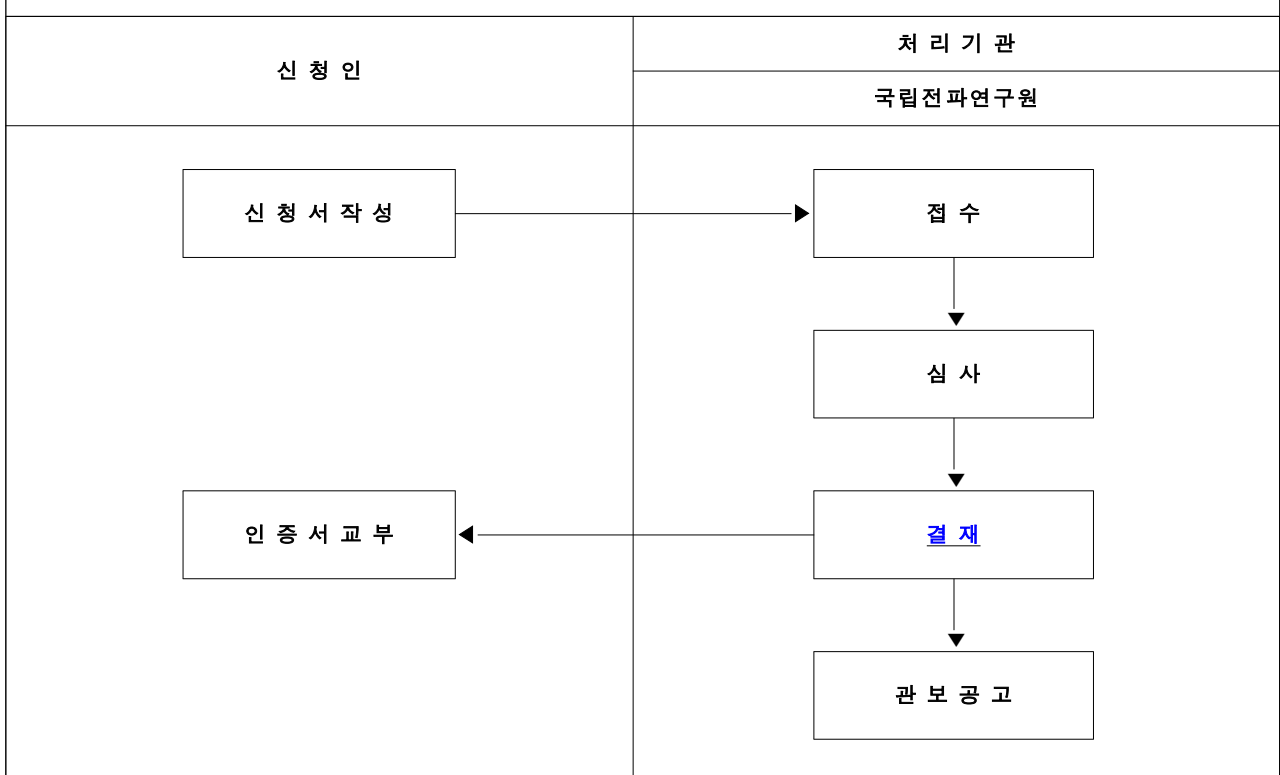
6. 대리인 지정서(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 타

- o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청인란에는 수입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 하십시오.
- o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둘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처 리 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 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제품명칭)		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무선기자재의 경우 기재(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등 록 방 식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FTA/MRA에 따른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무선 [] 유선 [] EMC [] SAR [] 전자파강도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시 험 성 적 서 정 보	시험기관명 :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		기술책임자 :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2. 시험성적서

-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4.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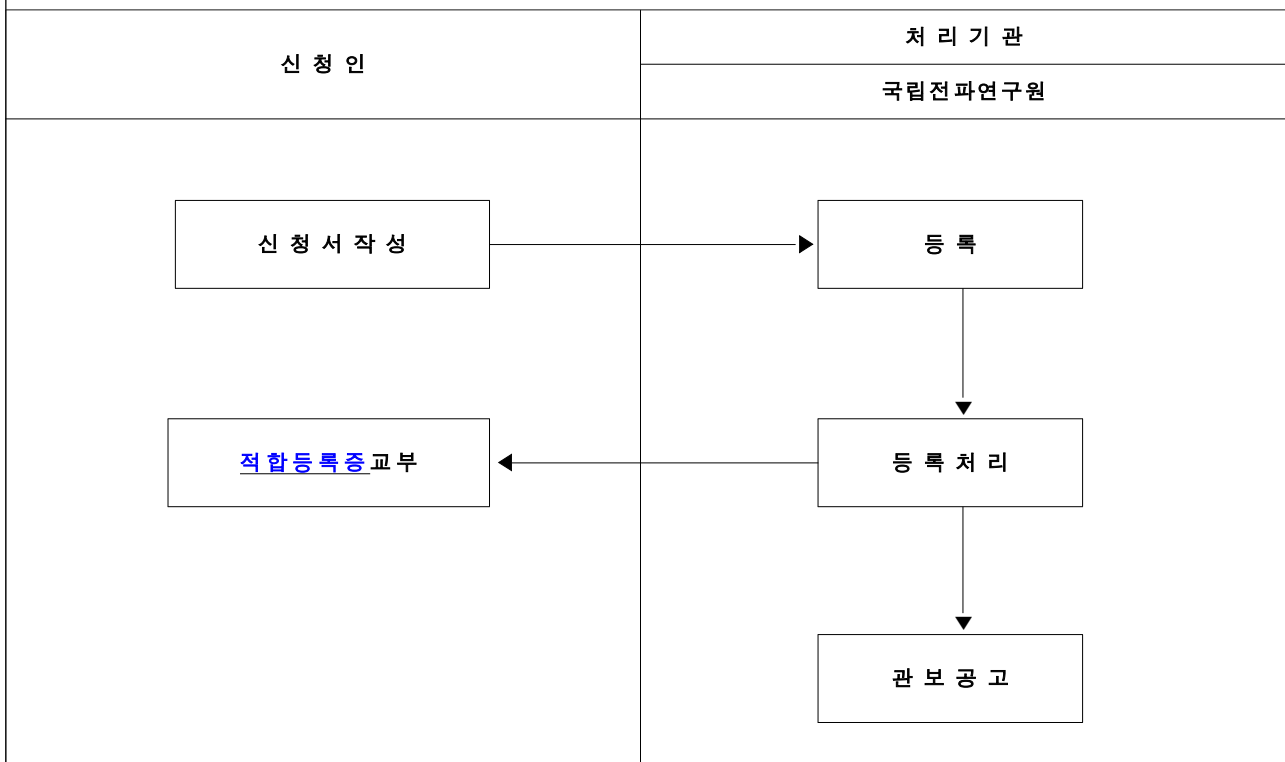
6. 회로도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및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보관합니다.

7. 대리인 지정서(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등록기자재 정 보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업무담당자	(전화)	기자재명칭 (제품명칭)	※ 뒤쪽 참조
	제 품 식 별 부 호		구성품(모듈) 인증등록관리번호	※ 뒤쪽 참조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뒤쪽 참조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뒤쪽(구비서류 작성방법) 참조		
	기 본 모 델	모 델 명	파생모델	모 델 명
		외관사진		외관사진
				※ 파생모델이 둘 이상인 경우 별도첨부 가능
	제 조 자		제조국가	
	시험기관명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기술책임자		

적 합 성 평 가 정 보	적 합 성 평 가 적 용 기 준	적합성평가 결 과	보관서류의 구 비 현 황	등록기기 보 완 유 무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위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u>적합등록증</u>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Registrant	
기자재명칭(제품명칭) Equipment Name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제조사/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등록연월일 Date of Registration	
기타 Others	
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i>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i>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 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구 분	[] 수입자 [] 제 조 자 [] 판 매 자				

신 청 기 자 재	기자재명칭		제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무선 [] 유선 [] EMC [] SAR [] 전자파강도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 예 (시험기관명 : [] 아니오		시험접수번호 :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주 소	(우)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설명서 1부. 2.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1부. 3. 사용자설명서 1부. 4. 외관도 1부.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6. 회로도 1부. 7.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	--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또는 5일)
신고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적 합 성 평가사항	적합성평가의 종류	[] 적합인증 [] 적합등록		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			모델명	
	상호또는성명			인증(등록)연월일	
	제 조 자			제조국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기자재의 변경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험성적서(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3.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①수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②위탁자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③신 청 기자재	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수 량		금 액		
④ 통 관 세 관 명			⑤면제신청사유 (해당 조문)		
⑥면제확인 번호			⑦사후관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위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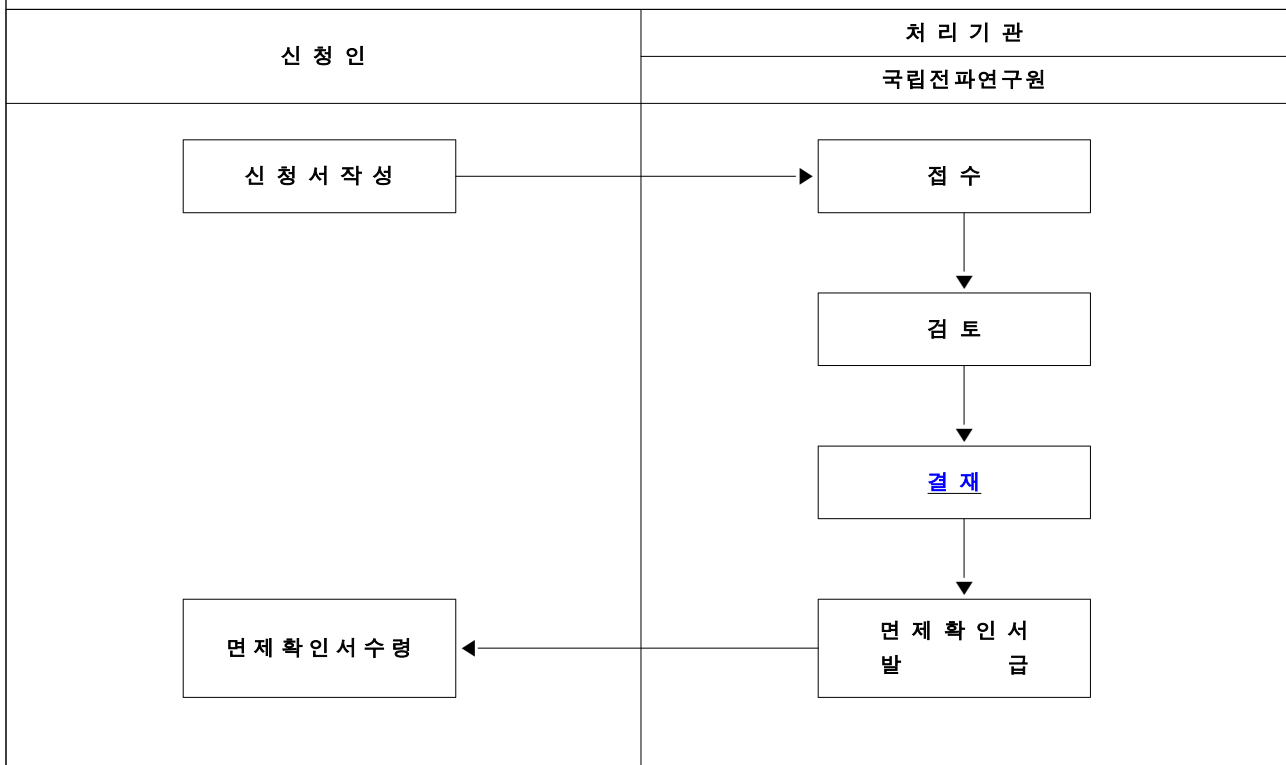
제출서류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각 1부.
	※ 비 고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외로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방법

- ①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②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③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④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⑤ 면제신청사유 : 제20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면제사유 및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⑥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⑦ 사후관리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 적합성평가확인

[] 사전통관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①요건신청번호		②요건승인번호		③B/L번호			
④수입자	상 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⑤수입화물주	상 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⑥ 품 명							
⑦ 기자재명칭 (거 래 품 명)							
⑧ 모 델 명				금 액			
⑨ H S 번 호		⑩ 인증·등록·관리번호 (시험기관/신청번호)				⑪ 수 량	
⑫ 제 조 자				⑬ 제 조 국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의한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신청을 하여 사전통관을 확인받은 기자재는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전통관 한 기자재는 중점 관리대상이므로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기자재로 분류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xx.xx.>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해 지 내 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 조 자 명

해 지 사 유	☐ 제조중단 ☐ 수입중단 ☐ 판매중단 ☐ 기타
기 타 사 항	

제27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적합인증서(또는 잠정인증서, 적합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	---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xx.xx.>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재 발 급 내 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 조 자 명
재 발 급 사 유		☐ 분 실 ☐ 손 상 ☐ 기 타			
기 타 사 항					

제28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또는 잠정인증서, [적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동일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 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청기자재	적 합 성 평 가 구 분	[] 적합인증 [] 적합등록		적합등록 보관서류 사본 보관여부	[] 보 관 [] 미보관	
	기자재명칭			제품식별부호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 파 수 포 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	상 호 명			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 파 수 포 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1부.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1부.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1부.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3에 의한 해당 수수료
------	---	---

구비서류 작성방법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제22조제3항제2호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서류

2.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사본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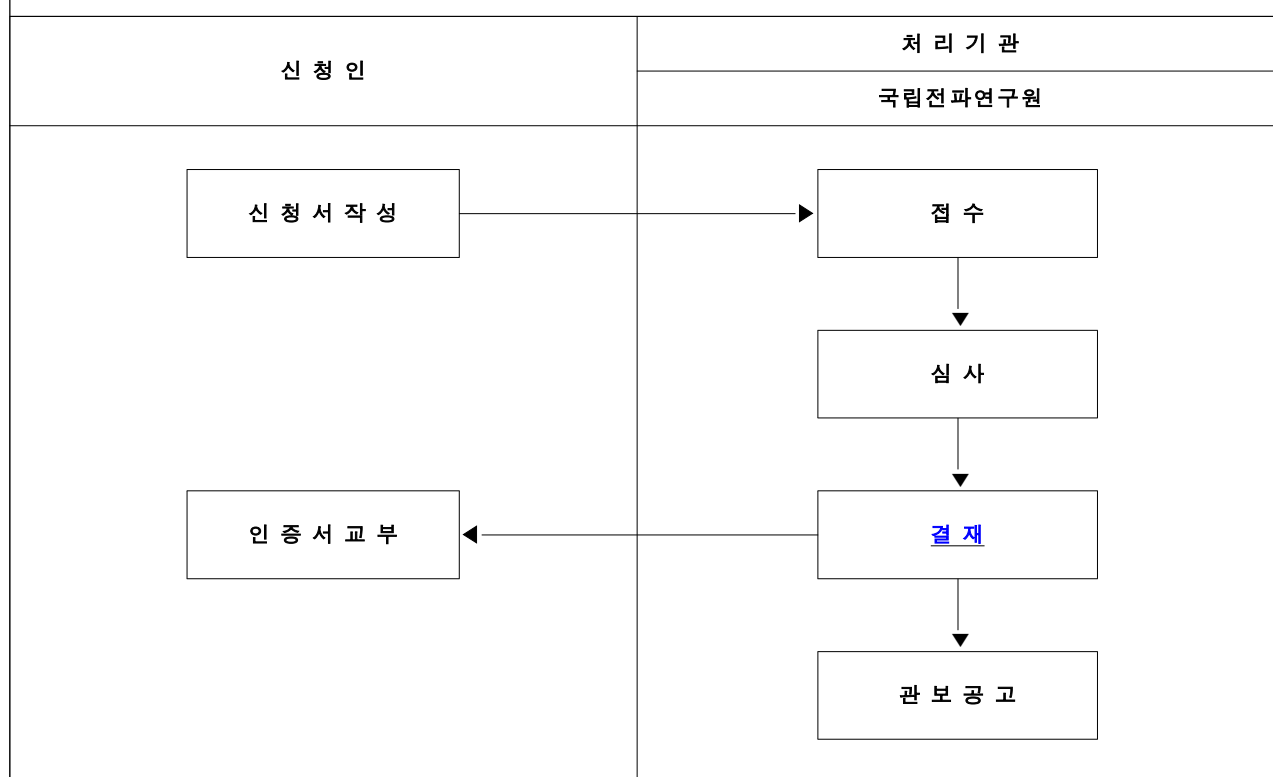
5.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타

- 동일기자재 적합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사본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적합등록 보관서류 사본 보관여부'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자	상 호 명			
	대 표 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동일기자재 (신청기자재)	적 합 성 평 가 구 분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 모델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동의자 (선인증자)	상 호 명			
	대 표 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성평가 사항	보관서류 사본 제공여부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의 경우 신청자에게 동일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사본 제공여부 [] 제 공 [] 미제공		
	상 호 명		인증·등록·관리 번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 모델명		적합성평가 연월일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위 신청자 및 동의자는 아래 유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해당기자재에 대하여 동일기자재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동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를 한 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자에게 적합인증서, 적합등록증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의 경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관서류 사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미 제공시 적합성평가 신청 불가) -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 원장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기자재 적합등록자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에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해당 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